

## 1. 개정이유

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여건을 고려하여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에 대한 이행의무 명시

나. 건설폐기물 수집·운반증 발급기준 개선 및 명확화를 위해 전용차량의 경우 동일차량에 대해 중복으로 수집·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고, 임시차량에 한해서만 가능함을 명시

다. 「농지법」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순환토사 사용용도 중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 수정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Ⅲ. 제4호의 [해설]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건설폐기물을 배출, 수집·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, 위치정보, 영상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해 입력하여야 하며,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[별표6]에 따른다.

Ⅲ. 제5호의 [해설] 제7호 중 “동일차량으로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2 이상의 처리업에 대한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 등으로 중복하여 수집·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.”를 “동일차량인 경우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둘 이상의 처리업에 대한 전용차량으로 중복하여 수집·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. 다만, 임시차량으로 중복하여 수집·운반증을 발급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V. 제2호 라목의4) 중 “「농지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2호”를 “「농지법」 제2조제6호의2나목”으로 하고, [해설] 제12호 중 “「농지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2호”를 “「농지법」 제2조제6호의2나목”으로 하며, “「농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농지의 성토기준에 맞춰 사용할 수 있으

나,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할 수 없다”를 “「농지법 시행  
규칙」 [별표4]에 따른 농지의 성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IX. 제2호 재검토기한 중 “2022년 7월 1일”을 “2025년 7월 1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Ⅲ.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·수탁 계약 등</p> <p>1~3. (생략)</p> <p>4. 건설폐기물의 인계·인수</p> <p>[해설]</p> <p>1~9. (생략)</p> <p><u>(신설)</u></p> <p>5. 폐기물수집·운반증의 발급</p> <p>[해설]</p> <p>1~6. (생략)</p> <p>7. <u>동일차량으로 다른 건설폐기</u></p>	<p>Ⅲ.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·수탁 계약 등</p> <p>1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건설폐기물의 인계·인수</p> <p>[해설]</p> <p>1~9. (생략)</p> <p>10. <u>건설폐기물을 배출, 수집·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, 위치정보, 영상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해 입력하여야 하며,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[별표6]에 따른다.</u></p> <p>5. 폐기물수집·운반증의 발급</p> <p>[해설]</p> <p>1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동일차량인 경우 다른 건설</u></p>

물 처리업 등 2 이상의 처리업에 대한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 등으로 중복하여 수집·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.

V.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

1. (생략)
2.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가~다. (생략)
- 라. 순환진흙 및 순환토사
- 1)~3) (생략)
- 4)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2호

[해설]

- 1~11. (생략)
12. 순환토사를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「농지법

폐기물 처리업 등 둘 이상의 처리업에 대한 전용차량으로 중복하여 수집·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. 다만, 임시차량의 경우 둘 이상의 처리업에 대한 임시차량으로 중복하여 수집·운반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V.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

1. (현행과 같음)
2.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가~다. (생략)
- 라. 순환진흙 및 순환토사
- 1)~3) (생략)
- 4)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조제6호의2나목

[해설]

- 1~11. (현행과 같음)
12. 순환토사를 「농지법」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「농지법 시

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농지의 성토기준에 맞춰 사용할 수 있으나,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IX. 행정사항

1. (생략)
2. 재검토기한

○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행규칙」 [별표4]에 따른 농지의 성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IX. 행정사항

1. (현행과 같음)
2. 재검토기한

○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